

2023년 안전감찰 활동 기본계획

조 성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전임책임연구원, cksaint@cni.re.kr

CONTENTS

1. 서론
2. 안전감찰 제도 개요
3. 충청남도 안전감찰 수요분석
4. 안전감찰 목표 및 기본 방향
5.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6. 결론

요약

- 안전감찰 활동의 기본 취지를 이해하고, 최근 언론보도 및 안전신문고 신고 현황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도가 2023년 안전감찰활동을 위해 지향해야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목표에 따른 전략과 세부 실행과제를 선정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위험목록보고서, 언론보도의 주요 이슈, 행정안전부 감찰유형, 충청남도 기 추진 감찰활동 및 안전부패 행정수요 내용을 종합하여 2023년 안전감찰 활동 추진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고 감찰 주제를 선정함
- 안전감찰활동의 기본방향은 안전의식 개선과 안전문화의 확산을 통해 부패 유발 구조를 추적하여 감시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감수성을 강화하는 데 둠
- 추진전략으로는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발생우려 요인 집중감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감찰로 설정하고 각 추진 전략 별 감찰 주제는 (1)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발생우려 요인 집중감찰에서 120억 미만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관리실태,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 책정 실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적정성, 안전점검 보고서 수행기관 선정 적정성, 발주자의 공사시행단계 안전관리 업무 이행 확인 및 해체 계획서 이행여부, 출렁다리 안전 감찰을 수행함 (2)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감찰로는 폭염 대비 근로자 보건안전과 석면 해체·제거 시 산안법-석면법 위반사례 감찰을 수행함
-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부패와 불법요소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관행으로 이어진 습관을 해소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감찰 활동 추진의 연간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차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0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복잡 다기해지는 각종 재난과 더불어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수준이 높아지는데 반해 체감 안전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남
- 이에 생활 속의 위험요소와 재난관리체계 운영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관리 함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각종 재난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함
-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감찰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지침을 통해 지자체 조직개편과 더불어 안전분야 감찰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초기 안전감찰 제도의 방향은 관행적인 부패요인과 안전무시 관행과 토착형 안전비리의 근절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예방조치, 응급조치, 안전점검, 재난상황관리, 재난복구 등 재난관리 전 단계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정·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¹⁾
- 재난 사고의 연도별 발생과 인명피해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는 등의 현상은 대응·복구 위주의 재난관리 정책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피해저감을 위한 예방·대비에 초점을 맞춘 변화가 필요함
- 따라서 생활속 위험요인과 재난관리체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감지하고 시정하여 재난발생을 방지하고, 재난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안전감찰 제도의 활용이 요구됨

1) 재난안전법 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조정), 제77조(재난관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행정안전부 직제 제19조(안전감찰담당관) 근거

- 안전감찰 제도의 정착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차년도 감찰활동 실시의 방향 및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보고서에서는 안전관리 체계, 안전 점검 실태의 진단을 통하여 안전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2023년 충남도가 시행하고자 하는 안전감찰의 기본 방향과 목표 및 전략에 따른 실행과제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시급히 개선해야 할 중점과제 선정 및 부패유발 구조를 파악하여 도 차원의 감시역량 결집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연구의 범위

- 안전 감찰 업무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매년 모든 영역의 재난 및 사고 종을 다루기 어려우므로 민선8기 충남도의 정책방향과 안전감찰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의 한계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2023년 수행하여야 할 과제 및 목표를 도출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제안하는데 초점을 맞춤
- 조사 분야는 기관별 감사사례(안전비위 등), 실제 사고사례, 언론 등 기존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분야 외에 주민 신고사례를 통해 도출된 분야를 망라함

● 연구의 기대효과

- 안전감찰 업무의 기본 테마를 설정함으로써, 건축, 산업, 식품안전 등 안전 분야 전(全)영역에서 고질적 안전부패 사례를 발굴·개선하는데 기여함
-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불공정 갑질 행위 등 안전 분야 생활적폐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규제완화의 미명하에 각종 안전규제를 탈법·편법으로 회피, 완화, 폐지하는 사례에 대한 적발을 내용으로 하여 도민 생활의 실질적 안전 확보에 기여함

● 연구의 정책활용

- 이 연구 자료는 역점 시책화 및 관련법령 개정을 위한 중앙부처 제안, 워크숍 등 대외발표와

안전감찰 시행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됨

- 안전분야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안전감찰 시행을 통하여 발생가능한 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관련제도 정비에 활용됨

02

안전감찰 제도 개요

- 안전감찰은 안전감찰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조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개선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이행실태를 수시·정기적으로 감시 확인하여 부당사항을 처분하고,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활동을 의미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반복적 안전 관련 위법사항 및 사고발생 원인의 자율적 시정을 위한 체계 마련, 안전관리 순환체계(계획, 집행, 사후관리 등)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환류(feedback), 감찰 사례 확산 및 교육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 등의 목적을 가지는 재난 및 안전사고의 사전방지를 위한 제도 차원의 예방적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이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의 일환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제3자적인 입장에서 적부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활동
-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정부와 광역 지자체는 안전 감찰관을 신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시정·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안전감찰의 주체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으로, 중앙 단위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할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시행함
- 충남도의 안전감찰의 대상 및 범위는 도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업무로 한정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광범위하여 효율적 감찰 수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일반사항

● 수립배경

-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안전 분야의 불법행위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의 근절이 필요함
-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불공정 갑질 행위 등 넓은 범위의 안전 분야에서 안전부패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많으며, 안전 분야의 생활적폐가 만연한 상황임
- 안전 분야의 불법행위는 사고를 유발하며,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피해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됨
- 10년간 안전에 관한 규제가 계속적으로 완화되어 현재 안전규제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취약분야 및 재난 및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안전부패를 방지하고 안전관리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안전신뢰를 높이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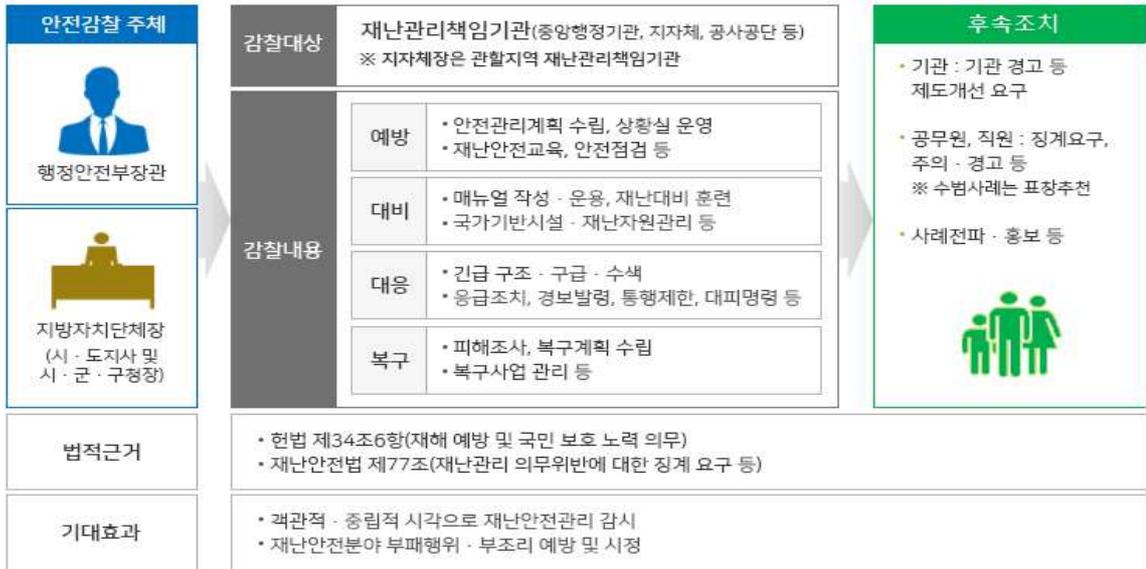
● 법적근거

- 헌법 제34조6항(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 노력 의무)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요구 등)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그 소속 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기관경고·징계 등을 요구하여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정·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조정), 제77조(재난관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행정안전부 직제 제19조(안전감찰담당관)에 의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예방조치, 응급조치, 안전점검, 재난상황관리, 재난복구 등 재난관리 전(全) 단계에 걸친 안전감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

● 성격

- 안전관리체계, 안전점검 실태 등을 심층 진단으로 안전부패 대책 수립

- 안전규제를 탈법·편법으로 회피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사례를 발굴하여 안전관리의 합리적 대책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 등의 경고 및 징계 등 처분 조치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그림 1] 안전감찰 개념도²⁾

2. 안전감찰

- 안전감찰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행하지 않는 등 업무 처리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조사 및 평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확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
 - 재난 및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감시 확인하여 부적절한 사항을 처분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는 활동
 -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안전감찰관을 신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반이 되는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름
- 감찰의 주체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며, 중앙 단위 및 관할 지자체

2) 자료 :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 <https://www.mois.go.kr/frt/sub/a06/b08/siTask/screen.do>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함

- 재난관리 책임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사, 공단 등이 포함되며, 재난 및 안전관리 책임을 준수해야 하는 기관으로 정의됨
-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평상시에는 안전관리 계획 수립, 상황실 운영, 안전점검 등의 예방활동과 매뉴얼 작성 및 운용, 재난안전 훈련, 국가 기반시설·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 재난관리자원 비축 등의 대비활동을 수행함
- 재난시에는 긴급구조·구급, 응급조치, 경보발령, 대피명령, 통행제한, 응원 등의 대응활동과 피해조사,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관리와 같은 복구활동을 수행함
- 안전감찰 활동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적으로도 개선토록 하는 대안제시형 안전감찰 실시함
- 안전감찰의 3요소는 법·제도, 시설·장비, 관리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은 이 세 가지로 요약됨. 예를 들어 법·제도의 경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 적정 여부’, 시설·장비의 경우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시공 실태 적정 여부’, 관리자의 경우 ‘상주 감리원 이탈, 자격 대여 등 실태 점검’ 등의 사례로 확인할 수 있음
- 안전감찰 시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질 경우, 해당 기관 및 공무원·직원에게 기관 경고 및 징계요구 등을 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 여건이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안전감찰은 4가지 대표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이는 첫째, 부정·오류의 예방 및 시정 기능(위법행위 적발 및 처벌), 둘째, 지도적 기능(업무수행의 효율성 증대, 업무추진방식개선 위한 대안 제시), 셋째, 안전감찰 결과 홍보·전파 등을 통한 개선향상, 넷째, 관리 통제 등 평가 환류 도모 등임

3. 안전부패

- 기본적으로 안전감찰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부패 사례에 대해 시정·개선 조치를 취하여,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대형재난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대형 재난안전 사고 대부분이 안전관련 규제와 점검 및 감독 부실, 토착형 비리, 안전무시 관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을 안전부패로 정의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음

● 2018년 10월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 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부패 유형을 제시하고 있음

- 사익추구형 : 도덕적 해이에 기반하여 사적 이익 추구에 몰두하는 유형
- 안전무시 관행형 : 일처리 편의를 위해 안전을 무시하는 유형
- 지역토착형 : 자기감독의 한계로 안전부패를 방치하고 묵인하는 유형
- 구조적부패 유발형 : 안전규제 및 안전관리 과정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부패

03 충청남도 안전감찰 수요분석

1. 재난·사고 영향요인 변화와 전망

- 대형재난 유발 가능성이 높은 우리사회 10대 주요 변화 요인은 기온상승, 안전무시 관행, 양극화 사회갈등, 기온 변동폭 증가, 엘리뇨/라니냐 현상, 법 제도 미흡, 대기오염, 경제상황 악화, 재난전문가 부족, 강수(강설) 변동폭 증가, 인구고밀화로 나타남(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2)
 - 2021년 결과와 비교하면 기온상승(1위 유지), 안전무시 관행(4위→2위), 강수(강설)변동폭 증가(10위 유지)는 작년에 이어 10대 주요 변화요인으로 선정
- 기온상승, 안전무시 관행, 재난정보 공유 및 활용체계 부족, 건축물 노후화 등은 다수의 재난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 변화요인
 - 노후화된 건축물은 단순한 붕괴위험 예방뿐만 아니라, 재난사고 유형, 위치한 지역, 타 변화요인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대책이 요구되므로, 다양한 관점의 접근과 대책 필요
-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재난의 강도는 커지고 영향을 받는 대상물들의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짐
 - (강도증가) 기온상승, 기온 변동폭 증가, 대기오염 등은 재난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요인
 - (피해가중) 고령화, 인구 고밀화 등의 사회·환경적 변화는 동일 강도의 재난에도 피해를 가중
 - (재난의 연계성) IT 의존도 증가, 사회기반시설 상호의존성 증가 등 재난 간 연계성으로 인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 재난의 형태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음

- 풍수해, 감염병, 사업장 산재의 경우 전체 전문가의 50% 이상이 5년 이내 대형재난사고로 확대될 수 있음
 - (안전사고) 안전무시 관행, 법·제도 미흡 등의 영향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사업장 산재를 대형사고로 선정, 자살, 범죄, 전기·가스사고 등 생활밀착형 사고의 선정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자연재난) 풍수해, 폭염, 지진, 황사, 가뭄, 산지재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
- 2022년 조사³⁾에서 재난·사고 유형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분야는 자연재난의 경우 풍수해, 사회재난의 경우 화재, 산불, 미세먼지, 감염병, 안전사고로는 범죄, 자살, 산업장 산재, 안전취약계층 사고가 5등급 위험군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의 재난행정 수요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형재난의 발생 가능성에 따라 판단이 가능함
 - 대형 재난의 발생 가능성과 반복성이 높은 재난 유형들이 사전적 안전감찰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재난행정 수요에 대한 파악을 통해 안전감찰의 잠재적 대상을 예상 가능함
- 본 연구에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2022)에서 발표한 재난·사고 유형별 지자체 위험등급을 수요 판단의 근거로 활용함
 - 재난·사고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설명하는 ‘피해지수’와 피해 발생 대상이 되거나 피해 규모를 증폭시킬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설명하는 ‘취약지수’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위험성을 평가
 - 전체 53개 재난·사고 유형 중 34개유형⁴⁾을 대상으로 유형별 지자체 위험등급을 산정하여 제시
- 충청남도의 위험등급은 자연재난(풍수해, 폭염, 한파, 가뭄, 지진, 산지재해, 황사, 조류, 대설)중 가뭄, 지진, 황사, 대설에서 위험등급이 4등급으로 높게 나타남
 - 국가 종합위험도가 높음 수준인 풍수해, 폭염, 한파에 대해서는 1~2등급으로 취약수준이 낮게 나타남
- 사회재난에서는 미세먼지, 해양유도선사고, 에너지 부문에서 4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기반시설 붕괴, 유해화학물질 사고 위험도 3등급으로 나타남

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2년 위험물 목록보고서에 제시된 재난·사고 위험전망

4) 자연재난 9개, 사회재난 16개, 안전사고 9개로 피해지수(자연재난과 안전사고 일부의 경우 취약지수 포함) 산정이 불가한 재난 유형을 제외

- 안전사고 9개 유형 가운데 사업장 산재, 자살, 안전취약계층 사고, 승강기 사고가 4등급으로 높게 나타남
- 시군별로는 시단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사고(4.1), 가축수산생물전염병(4.0), 사업장 산재(3.8), 폭발(3.8) 위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군단위에서는 기물(4.4), 황사(4.0), 폭염(3.9), 대설(3.9)

<표 2> 충청남도 시군별 위험목록 (시단위)

	자연재난(10개)										사회재난(17개)														안전사고(11개)														
	풍수해	폭염	한파	가뭄	지진	산지재해	황사	조류	대설	표면재해	간염	화재	산불	교통사고	미세먼지	폭발	가축수사생염	해양수산사고	건축물붕괴	사회기반시설붕괴	유해화학물질사고	방사능재난	전자정보	해양어염	국지적노발	수질어염	에너지	범죄	사업형산재	자살	안전취약계층사고	전기가스사고	의료제품사고	생활제품사고	등산레저사고	물놀이사고	식품사고	승강기사고	
전체	2.4	2.5	2.5	3.5	2.9	2.9	2.9	2.9	3	3	2.9	3.4	2.4	1.8	3.3	3.8	4	3.3	2.9	2.6	4.1	3.6	2.3	2.8	3.1	3.6	3.1	2.6	3.8	2.9	3.3	3.1	3.3	2.8	2.6	3.1	3	2.6	
천안시	4	4	4	4	5	4	4	3	4	-	2	3	2	3	3	5	3	-	2	4	4	3	4	-	3	4	4	3	3	3	2	3	2	3	4	3	2	3	
공주시	1	2	2	3	3	4	2	3	3	-	5	4	3	2	4	3	5	-	5	3	4	4	2	-	2	3	3	4	4	4	5	3	5	3	4	3	3	5	
보령시	2	2	2	4	2	3	2	4	2	4	4	5	4	1	4	3	5	4	4	3	4	5	2	3	3	4	4	4	3	5	5	4	5	3	3	4	4	4	2
아산시	3	3	3	3	3	3	4	3	3	2	2	2	1	2	4	3	4	2	2	2	4	3	2	2	2	4	2	2	4	2	3	2	3	3	2	4	4	4	2
서산시	2	3	3	4	3	3	3	3	3	3	2	4	3	1	3	5	4	3	2	2	5	4	2	3	4	3	3	1	5	2	2	4	2	2	2	3	2	3	
논산시	3	2	3	4	3	2	3	3	5	-	5	4	2	2	3	4	5	-	4	3	4	4	2	-	4	4	3	4	4	4	5	4	5	3	2	2	4	3	
계룡시	1	1	1	1	1	1	1	1	1	-	1	2	2	1	1	2	2	-	1	1	3	1	1	-	3	2	1	1	2	1	1	1	1	1	1	1	1	1	1
당진시	3	3	2	5	3	3	4	3	3	3	2	3	2	2	4	5	4	4	3	3	5	5	3	3	4	5	5	2	5	2	3	4	3	4	3	5	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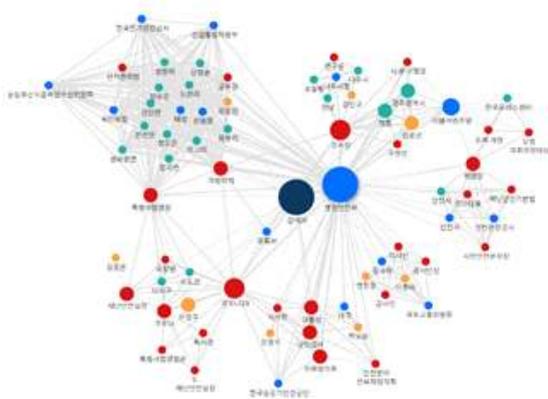
국립재난안전연구원(2022) 재구성.

<표 3> 충청남도 시군별 위험목록 (군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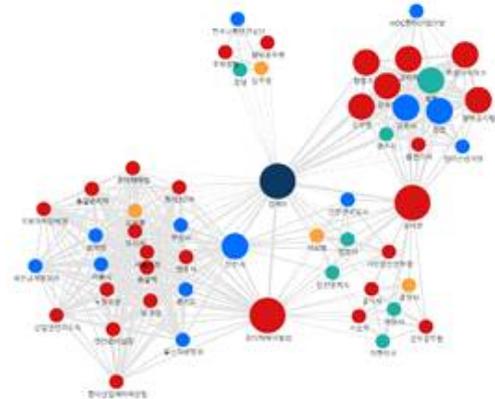
	자연재난(10개)										사회재난(17개)													안전사고(11개)															
	풍수해	폭염	한파	가뭄	지진	산지재해	황사	조류	대설	표면재해	간염	화재	산불	교통사고	미세먼지	폭발	가축수산생양돈전염병	해양유도선사고	건축물붕괴	사회기반시설붕괴	유해화학물질사고	방사능재난	정거통신	해양어업	국지전도발	수질어업	에너지	범죄	사업장산재	자살	안전취약계층사고	전기가스사고	의료제품사고	생활제품사고	등산레저사고	물놀이사고	식품사고	승강기사고	
전체	3.1	3.9	3.3	4.4	3.6	2.4	4	3.1	3.9	3	3.1	2.9	2	3	3.4	2.9	3.6	2	2.4	2.4	3	3	2.6	2	2.6	3	2.9	2.7	3.1	2.9	2.9	2.9	3.3	2.9	1.6	2.3	2.9	3.3	
금산군	4	4	4	4	4	3	3	3	4	-	4	4	2	4	4	3	2	-	3	2	4	2	2	-	2	3	3	5	4	5	5	4	5	4	3	2	4	4	
부여군	4	4	4	3	5	3	4	4	5	-	4	4	1	3	3	3	3	-	3	2	3	3	1	-	2	3	3	4	3	4	4	4	4	2	2	2	3	4	
서천군	3	3	2	4	3	2	4	3	3	3	4	2	2	3	4	2	3	2	2	3	3	4	3	2	3	3	2	3	3	3	2	4	3	1	2	3	3		
청양군	2	3	3	5	2	2	3	2	3	-	3	3	3	2	2	3	4	-	3	2	3	2	1	-	1	3	2	2	3	2	2	3	3	2	2	1	2	3	
홍성군	3	4	3	5	4	3	5	3	4	2	2	1	2	4	4	3	5	2	2	3	2	3	4	2	3	3	2	2	3	2	2	2	2	2	4	1	4	4	3
예산군	4	4	4	5	4	3	5	3	4	-	3	5	3	3	3	4	5	-	2	4	4	3	4	-	3	5	4	2	4	2	2	4	3	2	1	3	1	4	
태안군	2	5	3	5	3	1	4	4	4	4	2	1	1	2	4	2	3	2	2	1	2	4	3	2	4	1	3	2	2	2	2	1	2	3	1	2	3	2	

2. 언론 보도 내용 분석

- 안전관련 언론보도 내용은 개개 사건에 대한 리포트 성격을 가지지만, 지역의 관련된 안전부패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와 해당 불법 유형과 특성 파악을 위한 단서가 된다는 측면에서 유용함
- 다음 자료에서는 2021년 부터 2022년 언론에 보도된 안전감찰활동 관련 내용을 토대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감찰활동의 추이를 제시하고자 함
 -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재난 안전 분야 감찰활동을 주제로 키워드 관계도를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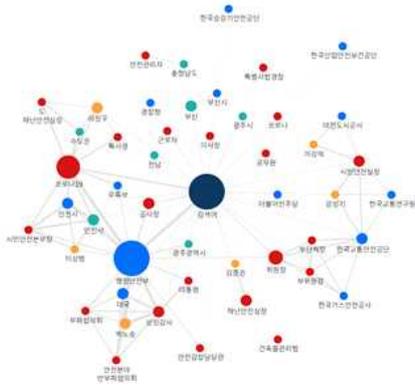


[그림 2] 2021년 중앙일간지 관련기사의 기관 정보 키워드 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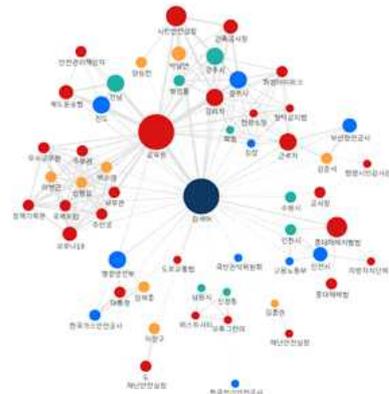


[그림 3] 2022년 중앙일간지 관련기사의 기관 정보 키워드 관계도

- 2021년 중앙일간지 발표기사의 키워드 관계에서는 산지관리법, 코로나, 특별사법경찰, 공사장 관련 내용이 중심에 있으며, 2022년에는 산업안전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룸
 - 산지 태양광설치 관련 사고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되며, 2022년에는 광주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 산업재해 및 중대 시민재해 관련 규정 강화가 관심을 받고 있음



[그림 4] 2021년 지역 일간지 관련기사의 기관 정보 키워드 관계도



[그림 5] 2022년 지역 일간지 관련기사의 기관 정보 키워드 관계도

- 지역일간지 중심키워드에서는 2021년 건축물관리법, 교통안전공단, 안전분야 반부패 코로나 등이 등장함
- 2022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등장하였으며, 안전관리책임자, 건축공사장, 광주시 붕괴사고에 따른 현장소장 및 검찰과 같은 처벌관련사항이 주를 이룸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대산업재해는 기존 산업안전기본법에 따른 적용범위가 특장기능한 반면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사항은 그 범위와 종류가 다양하여 관리에 대한 점검이 요구됨
 - 충청남도는 경제실에 중대재해예방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점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중대시민재해는 사회재난관리와 중첩관리되며 이에 따라 관리의 기초가 되는 대상 시설들이 각 부서에 분산되는 경향을 보임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가운데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붕괴 등 사고 위험에 대비한 점검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불의의 사고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짐
 - 기관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닌 시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접근 필요

3. 행정안전부 감찰 유형

-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행정안전부(과거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안전감찰 사례를 연도별로 유형화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2015년은 주로 각종 연습과 훈련, 국가안전대진단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내용이 많음
 - 부작위에 대한 사항을 주 점검 대상으로 함
 - 그 외 사항으로는 구제역, 메르스 대응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함
- 생활 밀착형 부패유형으로 감찰 대상이 된 것은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 짐
- 2016년은 가장 많은 15건의 감찰이 이루어졌으며, 감찰 활동의 적용범위가 다양하게 확대됨
 - 감찰 대상이 되는 부패 유형도 다양하여 사익추구, 구조적 부패 유발, 안전무시, 부작위는 물론 지역토착 부패 까지 포함됨
- 각종 훈련, 구제역·AI 대응실태, 건설공사현장, 공공폐기물 처리, 시설물 안전점검 불법 하도급,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실태 점검과 해수욕장, 무더위쉼터 운영 및 관리 실태, 어린이 위험노출에 대한 사항을 포괄함
- 지역적으로는 대전 도안대교 설치 이슈와 충남지역 구제역 발생 관련 감찰이 실시됨
- 2017년은 총 7건이 실시되었으며, 국가안전대진단, 지자체 재난안전 관리실태 점검과 사익추구로 인한 부패요인에 중점을 둠
 - 대형자동차 운행 관련 감찰, 한강유람선 스크류 손상 은폐 이슈에 대한 감찰이 이루어짐
- 2018년에는 구조적 부패유발 유형과 사익추구 유형에 중점을 두고 총 7건의 감찰이 이루어짐
- 구조적 부패 유발 유형으로는 2017년에 이어 국가안전대진단, 지자체 재난안전 전담조직 운영 실태, 과적차량 운행 실태에 대한 감찰이 이루어짐
- 사익추구 유형으로는 가스안전관리실태, 요양병원 등 안전관리 실태, 재난 복구비 집행실태에 대한 감찰이 이루어짐
- 2018년 10월 중앙부처와 시·도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43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안전부패 근절을 위한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하고,

2019년부터 집중적으로 안전분야 부패 유발요소에 대한 감찰을 시행하였음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하여 안전취약요소를 중점 감찰하여 총 6,511건의 부패 사례를 확인
- 중점과제에 대한 안전감찰과 안전규제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여 총 123건의 안전분야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53개 제도개선을 완료

- 2021년에는 해체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22년에는 약취·가스사고 해결 안전감찰로서 무허가 배출시설, 폐수 무단방류,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였음

4. 타시도 감찰활동 이력 분석

- 2019년 이후 광역지자체의 안전감찰 실시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 2019~2021 시도별 안전감찰 분야

시행연도	지역	안전감찰 분야	내용
2019	울산	동절기 재난안전 기동감찰	대설, 한파, 지역축제 관련 재난안전 관리 추진실태 기동감찰
2019	울산	풍수해 대비 하수도 뚝개정비 실태조사	풍수해 대비 공공하수도(뚝개, 관로) 정비 실태
2019	울산	물놀이사고, 폭염 및 풍수해 대비 기동감찰	물놀이장, 풍수해 취약시설
2019	울산	교통약자보호 안전시설 관리실태	- 노상주차장 설치운영 - 도로고정구조물설치 - 교통안전시설물관리 - 보호구역지정관리
2019	울산	야영장 안전관리 실태	- 등록 외 시설의 운영여부 및 하천점용 적정여부 - 시설물안전점검 - 소방전기가스시설안전관리
2019	울산	건설공사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	안전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2019	울산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	
2019	강원	여름철 안전감찰	-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 여름철축제장안전관리실태 - 폭염취약지역(계층)안전관리 - 재해예방사업추진및재난방지시설설치관리실태

2020	울산	겨울철 재난안전 기동감찰	건축·소방, 전기, 가스 안전관리
2020	울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해수욕장 안전관리감찰	거리두기, 시설물 관리, 코로나19 해수욕장 현장대응반 구성 및 운영
2020	울산	농업용저수지 안전관리 실태 감찰	저수지 물넘이 제조작업, 진입도로 정비, 표지판 정비
2020	울산	여름철 폭염대비 시설물 안전감찰	스마트그늘막, 음성통보시스템
2020	울산	재해영향평가 등 이행실태 감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사항 이행실태 -공사장가시시설설치 -수방자재비축관리실태
2020	경남도	태양광 발전시설 관리실태	- 산지 훼손 -공사물 축조신고미이행 -불법건축물 -유지관리소홀등
2020	경남도	도로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	- 보호구역 관리카드 관리부실 -어린이보호구역CCTV단속소홀 -안전시설미흡등
2020	경남도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실태	부적정 관리, 작동불능 상태
2020	경남도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 제당사면 누수 -댐마루유실 -여성토균열·누수 -방수로바닥콘크리트뜯김등관리부실
2020	경남도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화재안전감찰	
2020	경남도	코로나19 자가격리 및 방역관리실태	
2020	경남도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여부 -청소년지도사배치운영여부
2020	경남도	해빙기 안전사고예방과 위험절개지 관리 기동감찰	
2020	부산	방사능 재난대비 안전감찰	- 방사능 방재 대응체계: 방재계획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립·시행 전반 -방사능 누출검거및자료활용 -방사능방재비축자재,약품등관리·운영 -주민홍보및구호소관리 -방재요원관리및교육
2021	대전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찰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수료 주체관리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 -안전관리사항등
2021	강원도	어린이 보호 안전 시설 관리 감찰	- 어린이 보호 구역 분야 지정관리·점검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구역내불법주·정차단속및부적정노면주차장관리실태 -어린이놀이시설분야정기점검과보험가입여부 -중대사고보고이행여부등
2021	경기도	동절기 '공사현장 밀폐공간' 긴급 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공사 품질 -밀폐공간보건작업안전관리수립및이행여부 -고체연료사용에따른가스농도측정등근로자특별안전교육 -위험물관리법에따른유해물질관리,임시소방시설유지및관리 -긴급상황대비피난·대피시설유지상태 -관련법이행에따른위법사항조사및관리실태등
2021	경기도	철도건설 현장 해빙기 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관리 실태와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지반및굴착부붕괴,굴착사면유실여부 -가시설구조물에대한자체및정기안전점검시행여부 -노동자안전사고예방수칙준수여부등
2021	경기도	덱(Deck) 구조물 유지관리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 용도와 목적, 예산, 관련 법령 검토 여부 -설치위치,규모,구조형태,사용재료의적정성 -설계도서와시공상태의일치여부 -구조재/주요마감재의요구품질성능확보 여부 -지자체별별도관리계획수립과실행여부등
2021	경남도	침수 우려 지하차도 긴급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단시스템 작동 여부 -상황관리기준에따른통제기준준수여부 -상황발생시사전안내메세지전파체계,교통통제체계,현장책임관지정등사전대비관리실태등
2021	경북도	동절기 재난안전 대비 실태 안전감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철 종합대책 수립 시 각 분야별 재난안전 세부대책 미포함 -폭설시붕괴우려가있는적설취약구조물전수조사미흡 -습기에취약한제설제야외보관, -자동염수분사장치분사압력미달등
2021	경북도	동해안, 지진·해일 대비 실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 해일 조기 경보체계 구축과 주민 대피계획 수립 -대피장소관리,대피훈련실태등
2021	경북도	산지개발 관련 특별 안전감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시설, 임시 침사지 등 재해 영향평가 협의 사항 이행 실태 -비산먼지저감시설설치등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이행실태 -추락및낙석사고위험구간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실태 등
2021	광주광역시	급경사지의 관리 실태 안전감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 기준 준수 및 점검주기 이행 여부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위험도평가기준및평가의 적정성 -붕괴위험지역의지정및관리의 적정성 -보수및보강등정비사업수립 적정성
2021	대전시	승강기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승강기안전점검및외주화운영등안전관리 실태 -운행정지행정명령후불법운영여부및운영 정지표지부착상태 -안전관리자선임및안전관리교육이수여부 -행정처분적정성
2021	대전시	공사·공단 안전감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난 대비 대응체계 구축 등 재난관리 -건축·소방·전기·가스등시설물안전관리 -도시철도·하수처리장등시설물운영기준 준수실태 -응급상황대처매뉴얼점검 -건설공사장안전관리실태
2021	대전시	안전감찰 사례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별 테마감찰(겨울철 대설·한파 취약분야, 풍수해 대비 재해취약지역) -기획안전감찰(승강기시설안전관리실태, 공사·공단안전관리실태,공공부문산업재해사망사고제로화,해체건물붕괴사고재발 방지)등 -매립폐기물발생에따른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비닐막덮기등조치요구 -지하차도침수대비차량진입통제시설설치,저수로퇴적토준설요구 -해체공사감리자현장에미상주,안전장비 미착용및신호수미배치 -쪽방촌및독거노인등한파취약계층에대한 재난도우미매칭및비상연락망구축소홀
2021	부산시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이 시행한 공사와 용역에 대한 안전감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하물 위험방지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안전대미착용상태에서작업 -안전난간설치기준미준수 -적정보호구미지급 등
2021	부산시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감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안전점검 시 지적 점포 즉시 정비·관리 -노후시설물정기안전점검·관리계획수립 -전통시장지원사업신청시소유자·관리자·유지관리자사전명시 -전문관제도운용권고 -전통시장화재·안전관리협의체의참여와 협력필요성강조
2021	부산시	마을버스 합동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차령 초과 등 차량 안전관리 상태 -차량실내의자파손,청소상태(환풍그릴등) -운수종사자자격요건,교육등의관리실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자동차관리법위반사항등 -손소독제비치여부등
2021	부산시	환경관리실태 기획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미신고대기배출시설설치·운영

			-미신고폐수배출시설설치.운영 -미신고폐수.소음배출시설설치.운영
2021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특별점검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수립, 관리카드 현행화 - 불법노상주차장폐지.이전실행 - 교통안전시설설치.관리(안전표시,과속방지턱,미끄럼방지포장등) - 보호구역내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 적정성 등
2021	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감찰	- 시에서 마련한 해체.신축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현장 작동여부 - 해체허가및안전관리계획수립.준수여부 - 공사장안전.시공.품질및화재예방실태 등 건축공사전반
2021	세종시	관내 산책로, 통학로 및 보행로에 대한 합동 안전감찰	- 시설물 관리실태, 안전시설 설치여부 등을 점검 - 개인형이동수단(PM)사고위험지역 - 자전거사고다발지역의안전저해요소등
2021	인천시	장기 방치 빈집 등 관리 실태 안전감찰	- 빈집 빛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작성 - 빈집정비사업에관한업무지침등관련빈집정비사업및안전조치실태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사업시행계획서등에 따른안전조치및관리실태 - 정비사업구역내빈집관리및관련기관협조 체계유지실태등
2021	전남도	소규모 숙박시설 안전감찰	- 감염병 방역수칙 준수 및 방역용품 비치 - 소방시설설치및작동상태 - 시설물안전관리실태 - 불법용도변경및불법신증축 - 숙박시설사업자등록및자격기준준수 - 관광진흥법,건축법,소방법등법령위반사항 - 지난해감찰지적사항이행실태등
2021	전남도-영암군 합동	야영장.캠핑장 안전감찰	- 정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 - 전기.수질관리,소화기설치,비상용발전기 비치여부 - 어린이놀이시설신고,가설건축물신고등 인허가관리실태등
2021	충남도	코로나19 확산 막는 특별 방역 점검	- 방역지침 위반 점검 - 유흥5종,노래연습장등
2021	충북도	해체공사 붕괴사고 재발방지 안전감찰	- 사장 지정감리자 감독 소홀 - 건축물 의석면합유사실관계기관미통보 - 해체완료공사장가설방진망미철거등
2021~2022	충북도	정신요양.정신재활시설 동철기 안전점검	- 시설안전.재난대응 대책 - 화재예방.대응체계 - 코로나19대응감염병관리

2022	경기도	종합유원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 사고발생시 대응 매뉴얼 여부 및 사고 보고 체계 -코로나19등장기간후장후운영재개유기 시설에대한안전점검여부 -성수기간이용객통제대책 -실내구역마스크착용등
2022	경북도	출렁다리 안전감찰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3종 시설물 미지정 -출렁다리안전점검소홀,보수·보강미흡(주탑,난간,바닥프레임등유지관리미흡) -공공시설관리를위한조례미제정등
2022	경북도	자전거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실태 안전감찰	- 자전거도로 노선 미고시와 대장 관리 부적정 -자전거도로유지와안전관리부적정(노면표시,포장,자전거표지판,자전거횡단도,부속시설등유지관리미흡)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미수립등
2022	대전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감찰	지하차도 -통제기준설정과배수펌프,배수로정비상태 등 확인 -집수정,배수로,침수안내시설,진입차단시설설치 등 급경사지·산사태취약지역·2종시설물 -안전점검결과에따른붕괴위험지역지정여부 -비상연락망,위험예고감시체계등주민대피체계구축현황 하천시설물 -유수흐름에영향을주는저수로퇴적토와수목제거,수문·가동보등하천시설물관리상태 -불법시설물관리와하천공사장안전점검실태 파악
2022	인천시	봄철 해빙기 대비 공영주차장 시설 점검 실시	관내 급경사지 석축의 균열 및 파손과 배수 상태 불량 등
2022	전남도	궤도·삭도 안전점검	- 시설물 안전점검 실태 -안전관리책임자서임 -책임보험한도액충족 -중사지에대한안전교육실시 -변경사항및휴지계획미신고 -불법용도변경및불법신·증축 -승강기안전관리 -소방시설착등여부 등
2022	전남도	노후 기계식주차장 감찰	- 정밀안전점검 미수검 시설 -관리인 미배치 등
2022	전남도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 특별점검	- 굴착작업부터 타워크레인 등 현장 시설물의 안전 여부 -거푸집동바리의정품사용여부 -추락방지망설치여부,비계의설치상태,낙하물방지대책 등

2022	전북 도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점검	- 사업장 부지 내 자재(토사류, 골재류) 방진덮개 조치 부적정 -사업장부지경계선방진벽훼손및방치 -세류시설및살수시설고장및방치 -야외이송시설(컨베이어벨트)밀폐화조치 미흡 등
2022	제주 도	여름철 재난 대비 재난관리자원 집중 점검	-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관리 상황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DRSS)운 영상황 -시스템내재난관리자원현행화 -자재및장비사용가능여부 -필요장비추가구입 등
2022	충남 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안전관리 실태 안전감찰	적발사항 -보호구역지정(신규·변경등)행정절차이행 소홀 -보호구역유지관리소홀 -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관리소홀 등 제도개선사항 -교통약자보호구역해제 관련기준신설 -보호구역내시설물정기점검규정신설 -보호구역지정·관리계획통보기관확대 -보호구역지정신청서의민원처리절차및기 한등규정신설 -보호구역내자전거통행기준신설 등
2022	충남 도	해상 낚시 성수기 대비 안전 감찰	- 인허가, 폐업(원상복구 등), 출입항 신고 준수 등 행정 절차 이행 여부 -안전성검사(점검)이행,전문교육이수,안 전장비구축및작동실태등시설안전기준적 합여부 -법·제도현장작동실태,각종점검사례조치 여부등
2022	충북 도	유·도선, 수상레저 민관 합동 안전점검	- 선박의 정기·중간검사 또는 안전검사 실시 여부 -유도선안전성,인명구조요원확보및보험 가입여부 -정원초과승선행위와수상레저기구의안전 검사실시여부 -선체구조의안전성및구조장비확보여부등

04

안전감찰 목표 및 기본 방향

1. 기본방향

- 국정과제 변화와 민선8기 안전분야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를 수행하고, 부패유발 구조를 추적하여 감시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민의 안전 감수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함
- 국정비전의 변화에 따라 설정된 국정 목표 중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의 하나로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의 과제 설정
 - 범죄로부터 안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건강한 생활환경,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과제 포함
- 교통 및 건설·건축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 건설주체(발주·시공·감리)의 안전확보 책무를 강화하고, 건설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확대
 - 노후 인프라에 대한 시설별 최적 관리안 도출 및 시행

2. 목표

- 안전의식 개선
 - 우리 생활에 만연한 안전에 대한 경시는 경제발전과 성장 담론의 그늘에 가려진 인명경시 풍조와 연결됨
 - 사람중심의 도정지향과 도민의 행복 추구에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복지 실현은 안전의 확보에 있으며, 이는 행정기관 일방의 노력으로 개선되기 어려움

- 기업, 도민 각 분야 전 영역에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궁극적인 안전감찰 활동의 방향이 됨

● **안전문화 확산**

- 안전감찰의 기본 목적은 안전무시 관행을 탈피하여 생활속의 안전문화를 확산하는데 있음
- 문화는 개인과 집단, 조직 내에서 모든 행동과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되고 습관화 되어 모든 구성원에게 통용되는 관습적 가치로 확정된 것으로, 안전문화는 안전에 대한 학습이 체화되어 불편이 없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3. 추진전략

(1)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발생우려 요인 집중감찰**

-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변화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것을 돕고, 산업안전보건 기준 강화 등 도민의 성숙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산업안전 분야 집중관리
- 등록된 시설물 중 건축물이 전체의 64.36%로 가장 많으나 두 번째로 많은 시설이 교량이며, 최근 지자체가 관광 목적으로 설치하는 출렁다리는 중대시민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가운데 하나로 지적됨
 - 출렁다리는 경관이 좋은 산악·하천 등 위험지역에 주로 건설되고 움직임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지만 특수형태의 보도교에 관한 안전기준이 미비해 관리부실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계속됨

(2)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감찰**

- 기후변화에 따라 계절성 재난의 발생우려와 그 피해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풍수해, 폭염, 한파 등 재난관리를 위한 체계가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이 요구됨
- 계절에 따른 관광객 유입요인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특정 계절에 다발하는 사고 원인 점검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 필요성 강조

1.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발생우려 요인 집중감찰

과제 ① 120억 미만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관리실태 감찰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시공사가 선정하고 관련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하고 있어 지도기관이 독립성을 갖고 성실한 지도를 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발주자가 직접 선정하고 관련 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021.8.17.일 개정, 2022.8.17. 시행)
 - 2022.8.17.일 이후부터는 발주자와 자기공사자가 직접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계약을 체결
 - 전담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는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전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 전담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월 2회 이상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 발주자와 자기공사자의 범위
 - (국가) 정부기관, 국회, 법원, 선관위, 헌법재판소, 국립대학, 군부대 등
 -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기관(지방공기업 포함), 교육청(소속 학교) 등
 -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 (민간발주자) 건설공사 시공을 의뢰하는 법인 또는 개인
 - * 개인의 경우 전원주택 건축이나 조경공사 등을 시공업체에 의뢰하는 일반인도 포함

- 건설공사를 발주하였으나 他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접 총괄·관리하며 공사를 수행하는 `자기공사자`

- 특히, 공공 공사의 경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직접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지방고용노동청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공단에서 매년 평가하는 지도기관의 평가결과를 확인한 후 기관을 선정하여야 함(「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홈페이지 접속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단 및 평가결과(등급) 확인

과제 ②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 책정 실태 감찰

-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라 안전관리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7개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발주공사에서는 일부 항목이 누락되는 경우가 존재함
-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비가 항목별로 계상되어 발주·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감찰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전문 발주 부서가 아닌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는 제도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제60조(안전관리비)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3. 7., 2020. 3. 18., 2020. 12. 14.>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영 비용
6.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7.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비용

과제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적정성 감찰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건설공사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발주자가 도급 계약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간접비로 계상되어 모든 현장에서 계상을 하고 있으며, 사용비용에 대해 발주자 확인 후 정산하도록 하고 있음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개인보호구, 안전시설, 안전관리자 인건비 등 폭 넓은 범위로 인정
- 그러나, 일부 현장(특히, 중소규모 현장을 중심)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발주자가 자세히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
- 특히, 가장 사용을 증명하기 쉬운 개인보호구 구매를 과다하는 경우가 존재함(영수증으로만 처리하고, 손실처리)
 -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에 비하여 몇 배나 많은 안전모, 안전화 등의 개인보호구를 구입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하는 사례(실제 구입한 것보다 많은 영수증으로 의심되는 경우)
 - 안전 시설이 필요함에도, 시간이 드는 안전시설의 설치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

과제 ④ 안전점검 보고서 수행기관 선정 적정성 감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 기관을 평가하고 지정하여야 함
- 따라서, 안전점검을 시행할 기관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지정하는지 확인 필요함

과제 ⑤ 발주자의 공사시행단계 안전관리 업무 이행 확인 및 해체 계획서 이행여부 감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9조에 규정된 공사시행단계의 발주자 안전관리 업무 이행 준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안전점검 기관 지정 및 관리
-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른 사용 확인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름)
-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함께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안전관리비 집행실태 등을 확인하고 공정별 위험요소와 그 저감대책을 발굴 및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회의 정기 개최 여부
- 건축물 해체시 발생된 사고로 인하여 「건축물관리법」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신고가 강화되었으나 현장에서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해체공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이행에 대한 감찰 실시

과제 ⑥ 출렁다리 안전 감찰

- 최근 관광객 유치와 지역활성화 목적의 출렁다리 건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기준이 미비하여 안전 사각지대로 우려되는 출렁다리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중점 감찰 실시
 - 충남은 예산, 청양, 금산, 논산 4개지역에 출렁다리가 건설되어 있으며, 매 건설시 마다 국내 최장 시설로 안전성 관리에도 관심이 요구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시설은 연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되지 않은 시설에서도 안전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 국토부의 시설물 붕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케이블, 바닥판 등 주요부자재에 대한 점검방법과 기준이 제시된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여부 감찰
 - 출렁다리 안전점검 소홀
 - 보수, 보강 미흡사례
 - 주탑, 난간, 바닥프레임 등 유지관리 미흡사례
 - 공공시설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여부

2.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감찰

과제 ① 폭염대비 근로자 보건안전 감찰

- 폭염 위기 경보가 지난해보다 18일이나 일찍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되고, 7.1. 이후 체감온도 33℃ 이상의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일터에서의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폭염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 감찰 필요

– 폭염 위기 경보 ‘경계’ 발령 시점: (‘21년) 7.20. 10시 → (‘22년) 7.2. 12시

<‘22.7.1. 이후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 사례 >

- (7.1.) 15:55경 (날씨 맑음, 33.1℃) OO유통센터에서 컨베이어에 상차작업 중인 근로자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작업장소에서 이탈, 18:24분경 쓰러진 채 발견
- (7.2.) 16:35경 (날씨 맑음, 31.6℃) 경기 시흥시 건설현장에서 퇴근하던 근로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8:30분경 사망
- (7.4.) 12:20분경 (날씨 맑음 32.8℃) 대전 유성구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고 휴식을 취한 뒤 아래층으로 내려가다 다시 쇼크가 발생, 18:00시경 사망
- (7.5.) 11:40분경 (날씨 맑음 32.8℃) 인천 강화군 건설현장에서 오전 작업 후 사라진 근로자가 12:40분경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발견, 병원으로 이송 후 사망

- 온열질환 사망자 다수는 건설업에서 발생(69.0%)하고 있으나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폐기물처리업, 임업, 음식 배달업 등 건설업 외 업종에서도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의 이행여부 점검
 - 첫째, 옥외 작업 시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을 준수해야 함

<옥외 작업 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

-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및 근로자가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
- (그늘) 옥외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햇볕을 완벽히 가리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그늘 제공
- (휴식) 폭염특보 발령 기간에는 매 시간마다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 제공,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최소화

– 둘째,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물류센터, 조선소, 제철공장 등에서는 작업장

내 냉방장치 설치, 보냉장구(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지급 등 별도 예방조치를 해야 함

<실내 작업 시 열사병 예방 수칙 >

- (냉방장치) 실내온도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작업장 내 냉방장치(공기순환장치, 냉풍기 등) 설치
- (환기) 냉방장치 설치가 어려운 경우 주기적 환기를 통해 더운 공기가 실내에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보냉장구(아이스조끼, 아이스팩) 지급·착용
- (작업일정 조정) 냉방장치 설치, 환기 등의 조치에도 실내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 업무량 조정, 휴식시간 부여, 긴급하지 않은 작업의 일정 변경 등 작업일정 조정

- 셋째, 근로자가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할 경우 사업주는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 작업 중지, 휴식 시간 제공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고열, 빠른 호흡(맥박), 두통 및 불편감, 경련, 반응이 없거나 느낌, 쓰러짐 등

과제 ② 석면 해체·제거 시 산안법-석면법 위반 사례 감찰

-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물질로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금지된 바 있으나, 사용금지 전 지어진 건축물에 지붕재, 천장재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
- 석면 해체·제거 시에는 사전에 작업을 신고하고 전문업체를 통해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2022년 3월 기준 충청남도 초중고 10개 중 5~6개가 석면학교에 해당하여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
 - 725개 초중고 중 57.2%인 415개 교가 석면건축물이 존재하는 석면학교에 해당
 - 고등학교 73.5%, 중학교 55.4%, 초등학교 49.3%
- 정부는 2027년까지 석면없는 학교를 목표로 겨울과 여름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석면을 제거하고 있으나 석면철거 과정의 안전지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최근 코로나 사태로 대면 모니터링이 축소되어 감시 기능이 약화된 상황
- 석면은 자연광물의 불연성 소재로서 과거 학교나 관공서에 의무적으로 사용했으나 세계보건기구가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국내에서도 2009년부터 사용을 전면금지
- 충남은 과거 석면광산이 다수 분포하였으며 석면 피해자도 전국최고수준으로 석면 안전관리와 피해 예방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됨

- 특히 석면해체·제거 업체의 난립과 낮은 전문성, 석면해체업체에 대한 평가 및 점검의 실효성이 낮으며, 석면해체작업 도급관계를 규정하는 법령이 부재하여 관행적인 하도급 횡횡
 - 실제 작업을 하지 않고 계약 수주를 전문으로 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다른 업체에 도급을 주는 중간브로커 업체 존재
 - 특히 감리인 선임 의무가 없는 소형 현장에 대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
- 석면 해체업체와 감리인을 산안법·석면법에 따라 노동부(석면해체업체)와 지자체(감리인)가 별도관리하여 기관간 상호 정보 공유가 미흡함
-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령 시행으로 석면해체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도 안전을 고려하여 석면해체업체를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전성평가 C, D 등급 업체 수주건이 없는지 교육청(수의계약 포함) 지도 필요
- 석면법 위반현장에 대한 감찰을 통하여 노동부에 통보
 - 해당 현장감리인의 업무해태 여부 등을 조사(석면법령)하고 처분하여 감리인의 경각심 제고 필요

<표 4> 산안법령 정비 주요 내용

	기 준	개 선
작업 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안법 시행규칙) 석면해체업자는 작업 전에 <u>작업계획서</u>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석면법) 감리인의 업무에 <u>작업계획서의 적절성 검토</u>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안법 시행규칙) 석면해체업자는 작업 전에 <u>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감리인의 적절성 검토를 받은 작업계획서</u>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작업 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안법 시행규칙) 석면해체업자는 작업 후 <u>석면농도기준(0.01개/cm³) 준수 여부</u> 측정 후 지방노동관서 제출 · (석면법) 감리인의 업무에 <u>산안법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 여부 관리</u>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안법 시행규칙)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 후 <u>석면농도기준(0.01개/cm³) 준수 여부 측정하고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감리인에게 준수 여부 관리 확인을 받은 후</u>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06

결론

1. 요약

- 이상에서는 안전 환경 진단과 대형사고 원인 분석을 통하여 충남도가 2023년 안전감찰활동을 위하여 지향해야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전략과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함
- 사회시스템의 변화와 기술수준 및 산업구조의 변화는 신종재난의 증가와 대형재난 확대로 이어졌으며, 기반시설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비율이 확대됨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구하는 가치의 변화를 고려하여 제시함

● 급증하고 있는 대형사고의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됨

- 첫째, 안전관련 규제와 점검 및 감독 부실
 - 둘째, 안전관련 시설·장비 투자 및 안전의식 부족
 - 셋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비정상의 관행화
 - 넷째, 재난관리에 임하는 정부기관의 소극적 대처
 - 다섯째, 비리와 부실이 정상이 사회 풍조
-
-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지적되는 안전부패유형과 위험목록 분석, 언론보도와 기존의 사례를 종합하여 만연한 생활 불법 요소를 찾아 처벌관계를 명확히 하여 행위를 근절하는 노력이 요구됨을 확인함
 - 특히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만연한 사례를 돌아보고, 원인으로 지적되는 위험관리 부담과 책임에 대한 전문가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안전을 담보로 한 사익 추구 행태를 지적함

2. 안전감찰 기본계획의 방향과 전략

- 안전에 우선하는 가치는 없으며, 안전을 해치는 불법관행을 근절한다는 방향 하에,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더 행복한 충남 실현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패유발 구조를 추적하여 국민의 안전감수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 추진전략

첫째,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발생우려 요인 집중 감찰

둘째,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감찰

● 실행과제

(1)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발생우려 요인 집중 감찰

- 120억 미만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관리실태 감찰

-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 책정 실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적정성 감찰

- 안전점검 보고서 수행기관 선정 적정성 감찰

- 발주자의 공사시행단계 안전관리 업무 이행 확인 및 해체 계획서 이행여부 감찰

- 출렁다리 안전 감찰

(2)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감찰

- 폭염대비 근로자 보건안전 감찰

- 석면 해체·제거 시 산안법-석면법 위반 사례 감찰

●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등 안전 부패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이어진 습관적 행태로서 단시간 내 해소하기 어려움

- 안전관련 규제와 점검 및 감독 부실, 안전관련 시설·장비 투자 및 안전의식 부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비정상적 관행, 재난관리에 임하는 정부기관의 소극적 태도, 비리와 부실이 정상으로 치부되는 사회풍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대형사고 예방은 요원한 일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안전부패를 뿌리 뽑고, 만연한 불법 요소를 근절하려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참 고 자 료

- 감사원. 감사총괄 및 안전분야 감사사례(총괄). 20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주요 해외사례. 2014.
- 고민서. 재난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민-관 연계방안 연구.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2017.
- 국토교통부. 201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9. 2019 위험목록 보고서.
- 김기욱·이정석.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감찰 방안 연구. 2019. 부산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안전부패 사례를 통한 안전감찰업무의 선제적 대응방안 연구.
- 행정안전부. 안전부패실태조사 추진계획 및 가이드라인. 2018.
- 행정안전부. 범정부 안전부패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2018.
- 행정안전부. 2018. 안전부패실태조사 추진계획 및 가이드라인.
- 행정안전부. 2018. 범정부 안전부패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 행정안전부. 2019. 안전감찰 사례집(Ⅲ).